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603호 2021. 6. 14(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12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029호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 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033호 행정대집행 물건 보관 및 처리 공고 ----- 7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049호 인천광역시 서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8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054호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 17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055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사완료 공고 ----- 20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1-112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6. 1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3로 220 외 1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1.6.14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1-6-14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0	인천광역시 서구 이남3로 220 (원당동)	20200420	'서로릉 이남'에서 착안. 신도시의 동서를 잇는 세번째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원길동 64-266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328번길 35-40 (원길동)	2008123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2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3-669	인천광역시 서구 간지로 144-6 (가좌동)	20090922	이 도로의 종점 부근이 옛 간지골을 지나므로 명명(간지는 옛날 이 지역에 있던 아픈 언뿔)	
4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4-26	인천광역시 서구 목항로245번길 14-2 (원창동)	20090922	목항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4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4-55	인천광역시 서구 목항로245번길 14 (원창동)	20090922	목항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4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고시일 : 2021-6-14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333-5 (석남동)	건물말소	20090922	이 도로의 종점 부근이 옛 건지골을 지나므로 명명(간지는 옛날 이 지역에 있던 마른 언뜻)	빛내리교회
2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 236 (오류동)	건물말소	20090922	풍수대로에서 나와 단봉초등학교 앞을 지나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 217 (금곡동)	건물말소	20090922	봉화촌이라 불리는 자연부락을 지나는 도로이므로 자연마을의 이름을 따 명명	
4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491 (감왕동)	건물말소	20090922	서쪽으로 길게 뻗은 해안이라는 뜻으로 해안을 해립할 때 서곶이라는 이름을 남기고자 명명	
5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757 (백석동)	건물말소	20090922	서쪽으로 길게 뻗은 해안이라는 뜻으로 해안을 해립할 때 서곶이라는 이름을 남기고자 명명	
6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로 88 (백석동)	건물말소	20090922	옛 자연부락의 명칭을 사용하여 한들로라 명명	전동지계차매매
7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로 74 (백석동)	건물말소	20090922	옛 자연부락의 명칭을 사용하여 한들로라 명명	한국금채산업(주)
8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216번길 19-1 (오류동)	건물말소	20090922	단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1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로110번길 6-3 (석남동)	건물말소	20090922	석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로110번길 6-1 (석남동)	건물말소	20090922	석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	인천광역시 서구 원정로178번길 54 (마전동)	건물말소	20081231	원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7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117번길 86 (오류동)	건물말소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황태식당
13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117번길 74-25 (오류동)	건물말소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GQ산업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1029 호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시행하는 「대로2-61호선(드림로)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협의(3차) 요청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송달장소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송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6. 1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의 명칭 : 대로2-61호선(드림로)확장공사
2. 사업 시행자 : 인천광역시 서구
3. 공고기간 : 2021. 6. 14. ~ 2021. 6. 29.
4. 공시송달대상자 : 아래 붙임 참조
5. 송달할 내용 : 편입토지 등에 대한 보상협의 요청(3차)
 - 협의방법 : 소유자 개별협의
 - 협의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로과 도로팀(☎560-4524)
 - 구비서류 :
 - 인감증명서 1부(보상금청구 및 수령용)
 -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매수자: 인천광역시 서구)
 - 주민등록초본(전주소 포함) 1부
 - 보상금 수령 통장사본(소유자 본인) 1부
 - 인감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6. 기타사항

- 손실보상 협의문은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 협의기간 중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재결신청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의 명칭 및 공시송달대상

사 업 명 : 대로2-61호선(드림로)확장공사

공시송달대상

순번	공시송달 대상자		반송일
	성 명	주 소	
1	미상(이름없음)	인천 서구 당하동 8**-3	2021. 5. 26.
2	유*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갈을길 2*-8*	2021. 5. 28.
3	미상(이름없음)	인천 서구 당하동 8**-11	2021. 5. 26.
4	포*나*봉*단	인천 서구 당하동 8**-5	2021. 5. 26.
5	미상(이름없음)	인천 서구 당하동 8**-5	2021. 5. 26.

인천광역시서구청고 제2021-1033호

행정대집행 물건 보관 및 처리 공고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3조(원상회복) 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에 따라 노상 적치물 등을 제거하고, 적치물 등의 보관 장소 및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6. 1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내용: 행정대집행 물건 보관 및 처리 공고
2. 공고기간: 2021. 6. 14. ~ 2021. 6. 28.(15일간)
3. 법적근거: 도로법 제61조, 제73조 및 제75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4. 공고방법: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구보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5. 보관목록: 공고 대상(세부 붙임 참조)

적치물등의 품명·규격·수량	위반 장소	보관일시 및 장소	취급자	비고
광고판 1건	심곡동 339-19번지	2021. 6.14. ~ 7.14.(1개월) 원창동 385 일원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축물 1건	청라동 105-64번지			

6. 적치물처리

가.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 적치물 등을 반환받을 소유자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반환 요구가 없을 때에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에 귀속·폐기처분되며, 반환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과(☎ 032-560-44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1049호

인천광역시 서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6. 1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공무원 수 및 조직의 확대에 따른 포상대상자 증가에 따른 현행화를 위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2. 주요내용

- 가. 모범공무원 추천관을 “실·과·소·동장”에서 “소속 부서의 장”으로 변경하여 모범공무원 추천관 재정비 함.(안 제2조제1항)
- 나. 공무원 수 증가 및 조직 확대에 따라 기존 선발인원 “20명”에서 “40명”으로 변경하여 포상대상자 수를 현행화 함.(안 제3조)
- 다. 불필요한 어휘를 삭제해 명확히 표기하고자 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총무과, 전화 560-4104, 팩스 560-27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 제안이유

- 공무원 수 및 조직의 확대에 의한 포상대상자 증가에 따른 현행화를 위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2. 주요내용

- 가. 모범공무원 추천관을 “실·과·소·동장”에서 “소속 부서의 장”으로 변경하여 모범공무원 추천관 재정비 함.(안 제2조제1항)
- 나. 공무원 수 증가 및 조직 확대에 따라 기존 선발인원 “20명”에서 “40명”으로 변경하여 포상대상자 수를 현행화 함.(안 제3조)
- 다. 불필요한 어휘를 삭제해 명확히 표기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및 가정보육과 사전협의
- 라. 기 타 : 해당사항없음

인천광역시 서구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의 규정”을 “제4조”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실·과·소·동장”을 “소속 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추천함에 있어서는”을 “추천할 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자도”를 “사람도”로 한다.

제3조 중 “공적심의회”를 “공적심의회”로, “20명”을 “40명”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를 “모범공무원에게”로, “하나”를 “하나에”로, “부여할”을 “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우선승진”을 “우선 승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년”을 “연”으로 한다.

2.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을 구청
결원 시 우선 전입

제5조제1항 중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를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서”로 하고, “다음달”을 “다음 달”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 호 어느”를 “각 호의 어느”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 구” 라 한다)”를 “구”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제4조----- -----필요한----- -----.</p>
<p>제2조(추천) ①모범공무원은 실·과·소·동장이 추천한다. ②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에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p>	<p>제2조(추천) ①----- 소속 부서 서의 장-----. ②----- 추천할 때 ----- ----- ----- -----. ③----- 사람도 ----- -----.</p>
<p>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인천광역시 서구 공적심의회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p>	<p>제3조(선발) ----- ----- 공적심의회 ----- -- 40명 -----.</p>
<p>제4조(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p>	<p>제4조(특혜) 모범공무원에게----- ----- -하나에----- --줄-----.</p>

- 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승진
- 2. 구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구청 결원시 우선 전입

3. 년 1회 가족동반 산업시찰

제5조(상여금지급) ①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정한 수당 금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생략)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 1. ~ 3. (생략)
- 4.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진출된 때

- 1. -----
---- 우선 승진
- 2.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을 구청 결원 시 우선 전입

3. 연 -----

제5조(상여금지급) ①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서 -----

----- 다음 달 -----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
----- 각 호의 어느 -----

----- . -----
----- 않는
다.

- 1. ~ 3. (현행과 같음)
- 4. 구 -----

의견제출서

검토구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 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국(군·구)별 의견			
협의개요	실·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1054호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시행하는 「석남동 소1-323호선 외 1개 노선 도로개설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협의(2차) 요청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송달장소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송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6. 1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의 명칭 : 석남동 소1-323호선 외 1개 노선 도로개설공사
2. 사업 시행자 : 인천광역시 서구
3. 공고기간 : 2021. 6. 14. ~ 2021. 6. 28.
4. 공시송달대상자 : 아래 붙임 참조
5. 송달할 내용 : 편입토지 등에 대한 보상협의 요청(2차)
 - 협의방법 : 소유자 개별협의
 - 협의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로과 도로팀(☎560-4523)
 - 구비서류 :
 - 인감증명서 1부(보상금청구 및 수령용)
 -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매수자: 인천광역시 서구)
 - 주민등록초본(전주소 포함) 1부
 - 보상금 수령 통장사본(소유자 본인) 1부
 - 인감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6. 기타사항

- 손실보상 협의문은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 협의기간 중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재결신청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의 명칭 및 공시송달대상

사 업 명 : 석남동 소1-323호선 외 1개 노선 도로개설공사

공시송달대상

순번	공시송달 대상자		반송일
	성 명	주 소	
1	미상(이름없음)	인천 서구 석남동 2*3-*1	2021. 6. 7.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1055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사완료 공고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9-14(2019.01.21.)호로 실시계획(변경) 고시하고 공사 완료한 도시계획시설【시설명: 주차장, 사업명: 심곡동 323-8번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1. 6. 1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323-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명칭 : 심곡동 323-8번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주차장 : A=1,433.2m²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서구청)

5. 사업기간: 2016. 3. 28. ~ 2020. 12. 31.